
2019년 사회적금융 성과보고서

2020. 7.

한국신용정보원

1 배경

- 신용정보원은 '18. 2월 발표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회적금융에 참여하는 기관간 금융지원 정보공유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DB를 구축·운영 중**(시행: '19. 9. 2.)

2 추진 현황 및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 DB 운영 현황

- 신용정보원은 은행 등 총 26개 기관으로부터 약 3천건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를 **집중·관리 중**이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인증유형 정보에 대출·보증정보를 추가하여 각 기관에 공유**

<사회적경제기업 DB 주요 내용>

- **(집중·공유 대상기관)** 17개 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집중 정보)**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 식별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 발생일자 등
- **(집중 기준)** 여신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등록
- **(공유 정보)** ①**기업정보**(사회적경제기업 유형), ②**대출정보**(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등), ③**보증정보**(보증기관, 보증액 등)

<참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정보보유 현황> (단위: 개, %)

구 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정보보유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동(행안부 직접보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체 기업수 ('19末)	2,435	1,592	16,848	1,176	총계 22,051
신정원 등록 차주수 ('19末)	1,247	88	1,574	30	총계 2,939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3 '20년 추진계획

-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확보) 신용보원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집중 받을 수 있는 근거 확보
 - 현재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 진행 중이며 '20. 8. 5. 시행 예정
 - (개정 전)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집중관리
 - (개정 후) 여신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집중·관리

<참고 : 개정 신용정보법령 요약>

1 공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등 근거 마련

- ①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등 고시 (감독규정 별표5)
- ②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 (시행령§19②)
- ③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고시(감독규정 별표6)

2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범위 근거 마련

- 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 범위(시행령 별표 2)
- ②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대상자 고시(시행령§21⑨ → 감독규정 별표6)

- (정보 집중·공유 개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정보 집중이 가능한 바,
 - 공공기관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 공공기관과의 협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중관리·공유 개시